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반호 관련 1898

발의년월일 : 2020년 12월 17일

제 안 자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을 신설하고,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'서울지식 재산센터 등'으로 수탁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을 '지식재산 기본 계획'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).
-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추진실적 평가 규정을 마련함(안 제5조제3항 신설).
-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제4항 신설).
- 지식재산 교육 사무를 '서울지식재산센터 등'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"수립한다"를 "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- 안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"전문기관이나 단체"를 "서울지식재산센터 등"으로 한다.

〈수정안 조문대비표〉

| 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책무) (생 략) | 제3조(책무) ① (제정안 제목 외의 |
| | 부분과 같음) |
| ② (생 략) | ② (제정안과 같음) |
| 제5조(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| 제5조(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|
| 수립)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 | 수립) ① |
| 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| |
| 여 5년 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| |
|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 | |
| 획"이라 한다)을 <u>수립한다</u> . | <u>수립·시행</u> |
| <단서 신설> | <u>하여야 한다</u> . <u>다만, 시장이 필요</u> |
| |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 |
| | 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 |
| |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 |
| | 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 |
|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| ② |
|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|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제정안과 같음) |
| 3. ∼ 5. (생 략) | <u>4</u> . ∼ <u>6</u> . (제정안 제3호부터 제5 |
| | 호까지와 같음) |
| <u>〈신 설〉</u> |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|
| | 년 연도별 지식재산 교육 시행 |
| | 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 |
| | <u>다)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추진</u> |
| |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 |

〈신 설〉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(생 략)

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위탁할 수 있다.

| | <u>4</u> | 시 | 장은 | - 전 | 년년 | 로 / | 시행 | 계호 | [의 |
|---|------------|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|
| | <u>추</u> ? | 진실 | 적고 | 구 교 | 카 | 및 | 해당 | 연도 | E의 |
| | 시형 | 행계 | 획을 | - 서 | 울특 | 별기 | 시의호 | 티 스 | <u> </u> |
| | <u>상</u> 약 | 김위 | 원호 | 티에 | 보 | 고하 | 여이 | : 힌 | 다. |
| 제 | 6조 | (ス) | 원시 | 업 | 등) | 1 | (제 | 정인 | <u></u> 上과 |
| | 같음 | 슬) | | | | | | | |
| | 2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서들 | 울지스 | 닉재/ | 산센I | 터 등 | <u> 등</u> 에 |
| | | | | | | | | | |

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의 지식재산 창출, 보호 및 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지식재산"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·정보·기술,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(遺傳資源),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지식재산을 창출,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
- 제5조(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」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지식재산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
 - 2.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교육의 전략
 - 3.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 - 4.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
 - 5. 지식재산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
 - 6. 그 밖에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 -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지식재산 교육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및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의 가을,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- 1.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
- 2. 지식재산 교육 교재 · 교구의 개발 및 보급
- 3. 지식재산 교육 사업
- 4.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
- 5.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서울지식재산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7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8조(홍보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- 제9조(협력관계 구축) 시장은 지식재산 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청, 저작권보호위원회,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